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성 북 구
(지역경제과)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변 호	135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2022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3년 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
- 2) 설치목적 : 중소기업육성발전 지원
- 3) 설치연도 : 1993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리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성북구에서 경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기준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 1.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담보-업체당 1억 원 이내, 신용-업체당 5천만 원 이내

다. 2023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 개요

1) 기금변경 사유

- 2022년도 정산에 따른 사업비 잔액(2022년도말 조성액)으로 예치금 증가
- 2022년 12월분 이차보전금 반영

2) 2023년도 기금변경 내역

- 2022년도 기금 정산 내역

(단위:천원)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라)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다)-(라)
전년도말 (가)	당해연도 (나)	계 (다)=(가)+(나)		
3,983,901	1,656,927	5,640,828	2,965,944	2,674,884

- 2023년도 기금 변경 총괄

(단위:천원)

구 분	기정 예산	변경 예산	증
기금 총 운용액	3,297,833	3,783,641	485,808

- 2023년 기정예산 3,297,833천원에서 3,783,641천원으로 증액 편성
 - 당초 예치금 295,083천원에서 780,620천원으로 증액 편성
 - 2022년 12월분 이차보전금 271천원 반영하여 증액 편성

3)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변경

(단위 : 천원)

항 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3,297,833	3,783,641	485,808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1,045,756	1,045,756	-	
예치금 회수	2,189,077	2,674,885	(증) 485,808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
이자 수입	63,000	63,000	-	

○ 지출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편성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3,297,833	3,783,641	485,808	
비용자성 사업비	2,750	3,021	(증) 271	2022.12월분 이차보전금 반영
융자성 사업비	3,000,000	3,000,000	-	
예치금	295,083	780,620	(증) 485,537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4) 2023년도 기금 조성(안)

(단위:천원)

조 성 액	사 용 액	2023년말 조성액 (잔 액)
3,783,641	3,003,021	780,620
· 융자금 회수: 1,045,756 · 예치금 회수: 2,674,885 · 이자 수입: 63,000	- · 비용자성 사업비: 3,021 · 융자성 사업비: 3,000,000	= · 2024년도로 이월(예치금)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3.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 기금의 운용·관리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 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